

진로상담부

학생 봉사활동운영 계획

2022. 03. 11.



목 차

I. 추진 배경 및 추진 근거	2
II. 추진 방향	3
III. 세부 운영	4
가.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	4
ㄱ.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4
나.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5
나.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5
ㄱ.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5
나.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7
다.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7
르. 본교 봉사활동 계획	9
미. 교내 봉사활동 시간인정	9
<참고자료>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10
<서식> 각종 서식	15

2022 학생 봉사활동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및 추진 근거

가. 추진 배경

추진 배경

- »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활동 영역의 다양화·내실화 추진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필요
- »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행정안전부)과 연계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필요

나. 추진 근거

-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8~2022)
-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2)
-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8.)

2. 추진 방향

목 표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실 행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운영

추진 방향

-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강화

학생의 진로와 흥미, 특기를 활용한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지역협의체 협력 체제 구축 및 봉사 프로그램 발굴·보급

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교감	진로진학상담교사	교무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교육과정부장

3. 세부 운영

가.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

ㄱ.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확인 강화

- 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및 VMS 기초지역관리본부와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기관 파악,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사전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

ㄴ.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해야 봉사활동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평일 인정 가능 시간 :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다만, 현월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한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및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	×		○				×	×	×	×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하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나.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ㄱ.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영역(3개)**
-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내봉사활동을 봉사활동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봉사활동 영역으로는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3가지 영역**이며 학교에서는 내용에 따라 학교봉사활동을 운영(예: 급식도우미(이웃(친구)돕기활동), 학교숲쓰레기줍기(환경보호활동), 교내 각종 캠페인활동(캠페인활동) 등)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일상적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학교별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
-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봉사활동 시간은 **학년도별 10시간 이내 편성 권장**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 2015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

○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10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것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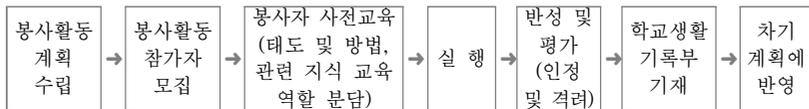
ex)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정보화기기도우미, 도서실도우미 활동 등

- 종류별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

ex) A학생이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도서실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B학생이 1년 동안 급식도우미를 계속 하는 경우 등 지양

- 취지: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소수의 특정한 학생이 독점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봉사활동 절차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수행절차

단 계	활동 내용
(1) 사전 교육	•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 유사 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3) 실천	•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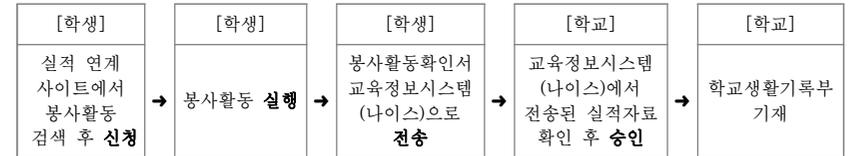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ㄴ.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절차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신청→실행→전송→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내용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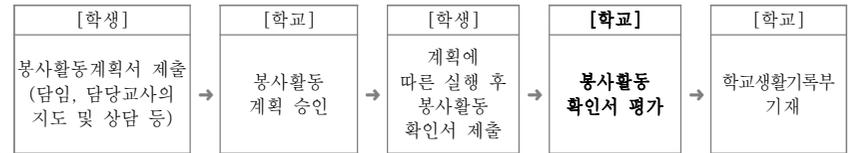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 (소양교육, 가정통신문, 교사 연수 등을 활용)

- 학생이 학년말(2월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 활동을 한 경우, 학생에게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을 증빙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봉사활동 절차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현행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

ㄴ.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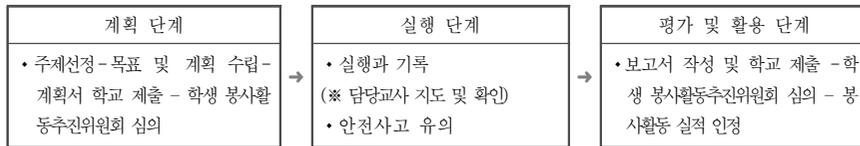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란 교내·외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함

○ 구성원별 유형

- **개인형:**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모듬형:** 진로나 흥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융합형:**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연합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장소, 내용, 대상 등을 결정하여 장기간 함께 실시하는 봉사활동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 기간: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
- 기관 및 장소: 교내·외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프로젝트 봉사기간 동안 동일 기관 및 장소에서 활동
- 활동 내용: 학생의 진로 및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되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함
- 절차



- 평가: 학년말(학기말)에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 평가 및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발급,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 기록

ㄹ. 본교봉사활동 계획

부서	활동내용	활동장소	기간	항목	인원	시간
교무부	학부모 총회	교내	3월	일손돕기	10	2
	교무실 이동시 도우미	교내	2월	일손돕기	20	2
연구부	공개수업 도우미	교내	1,2학기	교내봉사활동	5	1
	도서 도우미	교내	1,2학기	교내봉사활동	20	10
진로인성부	진로 도우미	교내	1,2학기	교내봉사활동	10	5
	봉사활동 사전교육	교내	3월	교내봉사활동	전교생	2
	민주시민교육 봉사활동 (아이의 탄생)	교내	5월	교내봉사활동	전교생	2
학생생활안전부	안전 및 폭력예방 캠페인	교내외	3월~10월	일손돕기	30	10
	캠페인 영상제작	교내	1,2학기	일손돕기	20	10
	선거관리위원	교내외	2학기	일손돕기	10	5
	우유급식 도우미	교내	1,2학기	일손돕기	60명내외	10
	체육행사 도우미	교내외	1,2학기	일손돕기	40	10
	체육대회 뒷정리	교내	1학기	교내환경정화	전교생	1
학년부	입학식	교내	3월	일손돕기	5	2
	졸업식	교내	2월	일손돕기	5	2
	방송 도우미	교내	1,2학기	일손돕기	5명내외	10
	현장체험학습 후 환경정화	교외	1,2학기	환경정화 활동	전교생	1
환경과학부	교과서 배부	교내	1,2학기	일손돕기	20명내외	10
예능부	과학실 교구 정리 도우미	교내	1,2학기	일손돕기	10명내외	5
	시월제 행사 진행보조	교내	2학기	일손돕기	참여학생	10
	학교 행사 관련 준비 및 문화 공연	교내외	1,2학기	일손돕기	참여학생	10
	각반 및 부실 분리수거 도우미	교내	1,2학기	일손돕기	80내외	10
	쓰레기장 분리수거 도우미	교내	1,2학기	일손돕기	30명내외	10
	화장실 정결 관리 도우미	교내	1,2학기	일손돕기	24명내외	10
	교사 주변 환경정화 도우미	교내	1,2학기	환경정화활동	15명내외	10
시월제 뒷정리	교내	2학기	교내 환경정화	전교생	1	
Wee클래스	친구사랑주간	교내	2학기	교내 봉사활동	25명내외	10

ㄹ. 교내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전학년 5시간 인정

학기	내용	시간	학기	내용	시간
1학기	봉사활동 사전교육 (3월)	2	2학기	시월제 행사 후 환경정화활동	1
1학기	굿네이버스 민주시민교육 '아이의 탄생' (5월)	2			

※ 학년 초 교사·학생·학부모에게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연수 및 안내 철저
- 연수 및 교육 : 교사는 학년 초 연수

학생은 학년 초 학교봉사활동 소양교육 시

학부모는 학부모총회 시 구체적으로 실시 (사전 안내 반드시)

참고자료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에 준해 계획서 제출은 생략
 3.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ex) 자율활동(체육대회)을 6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3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2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리더십 배양과정의 교육과정상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리더십 배양과정 참가 내용은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
 4.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 불가.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5. 민간기관·시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시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6.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7.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8.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학교 연계는 필수 조건이 아님)
 - ※ 예)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
 - 단,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을 인정함.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9.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어떠한 명칭도 불가)**

10.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및 쪽지로 서식 전송
11. 교외체험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ex)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12.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 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규정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13.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인정 불가**
14.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함)
 - 단 동일 기관의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15.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의 봉사활동
 - 재학생의(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6.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7.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8.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
 - ‘공식적 요청’ 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9.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20. 학생이 실무 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21. 헌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연(학년도) 3회까지 인정**

2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교실 및 특별실 청소 등 일상적 학교활동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진로체험 관련 활동(예: 학생기자활동, 자치법정 등)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 봉사시간 미인정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폭포-4(2019.1.2.)호)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23.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 가능하며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 학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인 또는 인정

참고자료 2 봉사활동 각종 서식

(서식1)

개인 봉사활동계획서		결재	담임	부장
인적 사항	동남중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기간 및 시간	2022 년 월 일부터 2022 년 월 일까지 ()일간, 총()시간			
주관 기관				
활동 장소				
봉사 영역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p>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2022 년 월 일</p> <p>학생 성명 : (인)</p> <p>동남중학교장 귀하</p>				

(서식3-1)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모듬형·융합형)				결재		담임	부장
프로젝트명							
인적사항	학 번	성 명	비 고	학 번	성 명	비 고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 ○ 중 · 고등학교장 귀하							

- ※ 모듬형 또는 융합형에 따라 인적사항 비교란에는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로 표시하세요.
-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서식4)

헌혈 학부모동의서 · 사후 확인서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인적사항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헌혈 일시	20 년 월 일, 총 ()시간						
헌혈 주관 기관							
봉사 영역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헌혈(전혈) () / 헌혈(성분헌혈) ()						
위와 같이 자녀의 헌혈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성명 :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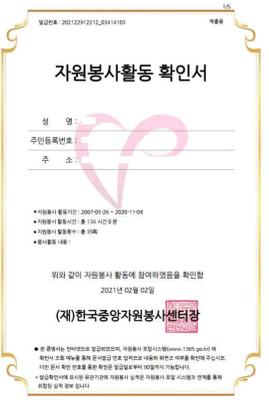
(서식5)

□ (2022) 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회의록

동남중학교

회의일시	20 . 03. 00. 14:00	회의 참석자	위원장 : 교감 000
회의장소			부위원장 : 000
회의안건	20 학년도 1학기 교내 봉사활동 프 로그램 심의 및 의결		위원 : 000, 000, 000, 000, 000, 000
기록 : 000			
회의 내용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결내용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봉사활동확인서 양식

 <p>봉사활동확인서</p>	 <p>자원봉사활동 확인서</p>	 <p>가계부서 봉사활동 실적</p>
<p>DOVOL 봉사활동확인서 (봉사주관기관 표시 없고 센터로 발급됨)</p>	<p>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활동확인서 (1쪽에는 봉사활동 시간, 횟수, 내용이, 2쪽에는 봉사주관기관이 '봉사실적등록기관'란에 표기되어 있음)</p>	
 <p>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p>	 <p>봉사자 실적 내역 정보</p>	
<p>VMS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1쪽에는 봉사활동 시간, 횟수, 내용이, 2쪽에는 봉사주관기관이 '관리센터[수요처]'란의 [수요처] 에 표기되어 있음</p>		